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75회 임시회 (2025. 4. 24.)

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건설위원회

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권 하 나

1. 제안경위

가. 의안번호: 25-40
나. 제 출 자: 마포구청장
다. 제출일자: 2025년 4월 11일(금)
라. 위원회 회부일자: 2025년 4월 11일(금)

2. 제출사유

「도서관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마포구 조직개편에 따른 구립도서관 운영주체 변경 및 관련 조항을 정비,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 등을 변경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도서관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사항 적용
나. 민선 8기 조직개편에 따른 구립도서관 관리부서 변경 및 관련 조례 정비
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내용 일치
  · 수탁자선정위원회 위원 위촉 절차 변경
라. 다자녀 가족 기준 완화로 인한 감면 대상 확대 및 비율 변경 등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도서관법」

2)「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정의)

3)「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2조(정의)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2025. 3. 13. ~ 2025. 4. 2. (제출된 의견 없음)

2) 새마포담당관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원안 동의

3)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

4) 가족정책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 없음

5) 제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의결(2025. 4. 8.)

5. 검토보고

○ 동 조례 개정안은 2025년 4월 11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4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개정안은 민선8기 조직개편 및 상위법 개정 등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제고하고, 다자녀 감면 기준을 확대하여 마포구립도서관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출되었음.

○ 조문별로 살펴보면, 민선8기 조직개편(2024. 2. 1. 시행)에 따라 사업소인 "마포중앙도서관"의 도서관 업무가 "교육정책과"로 이관되었고, **사업소는 폐지**되었음.

이에, 구립도서관 관리부서 및 운영 주체가 변경됨에 따라 현행과 맞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7조(조직 및 인력)을 삭제하고, 안 제6조(운영 및 관리) 제3항에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도서관장을 임명한다는 내용을 신설함.

현 행	개 정 안
제6조(운영 및 관리) ①·② (생략) <신 설>	제6조(운영 및 관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을 받은 자(이하“수탁자”라 한다)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을 임명하여야 한다.
제7조(조직 및 인력) ① 구청장은 도서관에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과 소속직원을 두며, 도서관 강좌 운영에 필요한 경우 원어민 강사 등 전문 인력을 둘 수 있다. ② 관장은 구청장이 임명한다. 다만 제6조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관장을 임명하여야 한다. ③ 관장은 도서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삭 제>

○ 그리고, 안 제8조(이용대상), 안 제9조(대출), 안 제10조(문화활동의 전개), 안 제10조의2(독서·문화 활동 지원), 안 제11조(시설 사용허가), 안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안 제13조(사용료 등), 안 제15조(기부·기증·기탁)은 구립도서관 운영 주체를 "관장"에서 "**구청장 또는 관장**"으로 변경하였음.

○ 그 밖에 안 제18조(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제2항 및 제3항, 제4항에는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시 "대표도서관장"을 "소관부서장"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조항을 정비함. 아울러, 안 제18조 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 정비와 관련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의 근거 법령을 명시함.

현 행	개 정 안
제18조(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①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히 협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관국장, 부위원장은 대표도서관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소관국장, 대표도서관장, 총무·기획예산·문화·교육 관련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문화계, 교육계, 관계 전문인사 및 시민단체 등 관련분야의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	제18조(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① ---------- 위하여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 ② ---------- 소관부서장---------. ③ ---------- 소관부서장, 행정·정책·문화 관련 ----------

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④ 위촉직 위원의 ------ 하되 ----------.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안 제2조(소재 및 명칭)와 안 제15조(기부·기증·기탁)은 「도서관법」 전부개정(2022.12.8.시행)에 따른 인용 조문의 변경 사항을 수정하였음.

현 행	개 정 안
제2조(소재 및 명칭) ① (생 략) ② 도서관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라 구분하며,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2조(소재 및 명칭) ① (현행과 같음) ② ---------- 제4조----------.
제15조(기부ㆍ기증ㆍ기탁) ① 도서관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도서관에 기부하고자 하는 경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9조에 따라 이를 접수할 수 있다.	제15조(기부ㆍ기증ㆍ기탁) ① 누구든지 도서관의 ----------기부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 또는 관장은 법 제47조에 따라 이를 접수할 수 있다.

○ 안 제13조의 제목 **“사용료 등”**을 **“이용료 등”**으로 수정하는 것은 「도서관법」 제48조(이용료)와 동일하게 규정하여 법적 체계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함.

○ 안 제22조(수탁자의 선정 등) 제4항 제2호는 수탁자 선정위원회 위원 선정 절차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수정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수탁자의 선정 등) ① ~ ③ (생 략)	제22조(수탁자의 선정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회 의원 : 2명	2. 구의회 ----------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 한편, 시설대관 부과 기준 및 감면대상이 변경됨에 따라 “〔별표〕 사용료 등의 부과·감면·환급 기준”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음.

- 시설 사용료의 부과 기준 중 “갤러리”가 “마포중앙도서관 스페이스”로 용도 변경됨에 따라 **“갤러리”를 대관시설에서 삭제함.**

- 또한, “소규모 강의실 및 토론방”도 부서 업무용(마포중앙도서관 문화행사 진행)으로 상시 활용되는 등 현재 대관이 중지되어 **“소규모 강의실 및 토론방”을 시설사용료 부과기준에서 삭제함.**

현 행

[별표]사용료 등의 부과 · 감면 · 환급 기준
(제13조제3항 관련)

1.시설사용료

가. 부과기준

구 분		기 준	금 액(원)
마포중앙 도서관	다목적강당	1회 3시간	450,000
	세미나실	1회 3시간	330,000
	갤러리	1일	300,000
	소규모강의실·토론방	1회 1시간	10,000
	집필실	1개월	150,000
	피아노	1회 3시간	15,000
서강도서관	세미나실	1회 1시간	10,000
소금나루 도서관	세미나실, 동아리실	1회 1시간	5,000
	다목적강당	1회 1시간	15,000

1) 사용시간 초과 시 기준금액의 시간당 사용료를 초과 시간에 따라 가산하고, 1시간 미만은 1시 간으로 본다.
2) 토요일 및 공휴일(휴관일 포함)은 사용료의 30%를 가산한다.
3) 각종 행사준비를 위한 사전 사용료는 기준 사용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가능하며, 시간당 사용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대 3시간에 한한다.
4) 냉 · 난방비는 무료로 한다.

※ 중복 감면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1개 항목만 적용함
※ 감면은 시설사용료 부과금액 총액에 대해 적용함

나. 감면기준

감 면 대 상	감면비율
마포구가 주최 · 주관하는 행사	100%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 주관하는 행사	70%
마포구 내 각급 학교에서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50%
마포구 내 「평생교육법」에서 정하는 평생교육 기관에서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마포구 내 장애인 · 보훈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 등이 사용하는 경우	
마포구 내 문화예술 관련 단체의 자선공연 행사의 경우	
마포구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구민 또는 마포구 내 사업자등록증 보유 단체가 사용하는 경우	30%
갤러리를 10일 이상 장기대관하는 경우	

개 정 안

[별표]이용료 등의 부과 · 감면 · 환급 기준
(제13조제3항 관련)

1. 시설사용료

가. 부과기준

구 분		기 준	금 액(원)
마포중앙 도서관	다목적강당	1회 3시간	450,000
	세미나실	1회 3시간	330,000
	집필실	1개월	150,000
	피아노	1회 3시간	15,000
서강도서관	세미나실	1회 1시간	10,000
소금나루 도서관	세미나실, 동아리실	1회 1시간	5,000
	다목적강당	1회 1시간	15,000

1) 사용시간 초과 시 기준금액의 시간당 사용료를 초과시간에 따라 가산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2) 토요일 및 공휴일(휴관일 포함)은 사용료의 30%를 가산한다.
3) 각종 행사준비를 위한 사전 사용료는 기준 사용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가능하며, 시간당 사용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대 3시간에 한한다.
4) 냉 · 난방비는 무료로 한다.

※ 중복 감면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1개 항목만 적용함
※ 감면은 시설사용료 부과금액 총액에 대해 적용함

나. 감면기준

감 면 대 상	감면비율
마포구가 주최 · 주관하는 행사	100%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 주관하는 행사	70%
마포구 내 각급 학교에서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50%
마포구 내 「평생교육법」에서 정하는 평생교육기관에서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마포구 내 장애인 · 보훈단체 또는 사회복지 단체 등이 사용하는 경우	
마포구 내 문화예술 관련 단체의 자선공연 행사의 경우	
마포구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구민 또는 마포구 내 사업자등록증 보유 단체가 사용하는 경우	30%

- 작년에 「서울특별시 마포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가 개정되어 특기적성 프로그램 관련 내용이 평생교육과로 이관되어,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수강료 부과 기준에서 삭제함.**

- 「서울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자녀 기준이 완화되어 **“다자녀 가정”의 감면 대상 확대 및 비율 변경 등 수강료 감면 기준을 수정함.**

- 이외에 “(별지서식) 마포구립 ○○도서관 운영 위탁신청서” 내 조례명 오기를 정정함. (「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운영 조례」 → 「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현 행

2. 수강료

가. 부과기준

구 분		수강료	비고
도서관일반 프로그램	독서문화 프로그램	월35,000원 이하	
	어린이영어 프로그램	월60,000원 이하	
특기적성프로그램		월125,000원 이하	

1) 운영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2) 재료비·교재비 등의 비용은 수강자 부담으로 한다.
3) 도서관일반프로그램 중 어린이영어프로그램은어린이영어도서관에 한한다.

나. 감면기준

감면대상	감면비율	
	도서관일반 프로그램	특기적성 프로그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본인 및 가족	100%	100%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 가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대상자 본인	70%	70%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본인		
다자녀 가정(다둥이행복카드 발급 대상 중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3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50%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본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 〈개정 2020.7.9.〉	50%	30%

1) 감면은 마포구 거주자에 한함
2) 특기적성 프로그램은 1명당 1강좌에 대해서만 감면 비율 적용
3) 도서관일반프로그램의 다자녀가정 혜택은 만5세 이하의 막내자녀를 둔 가정에 한함

개 정 안

2. 수강료

가. 부과기준

구 분	수강료	비고
독서문화프로그램	월35,000원 이하	
어린이영어프로그램	월60,000원 이하	

1) 운영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2) 재료비·교재비 등의 비용은 수강자 부담으로 한다.
3) 어린이영어프로그램은 어린이영어도서관에 한한다.

나. 감면기준

감면대상	감면비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본인 및 가족	100%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 가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대상자 본인	70%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본인	
다자녀 가정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 및 그 가족)	5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50%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본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 〈개정 2020.7.9.〉	

1) 감면은 마포구 거주자에 한함
2) 감면 대상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 감면비율이 가장 높은 1개의 항목만 적용
3) 다자녀 감면은 1가정당 1강좌에 대해서만 감면 비율 적용

○ 이와 같이 검토한 바, 동 개정안은 민선8기 조직개편에 따라 구립도서관의 관리부서가 변경되어 이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며, 「도서관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수정하고, 다자녀 가족에 대한 감면 대상 범위를 확대(3명 → 2명)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

○ 다만, 도서관 대관시설 축소 및 특기적성 프로그램 미운영, 다자녀 가정 감면 대상 확대 등에 따른 구 세입 감소와 재정 부담에 대해서는 면밀히 살펴야 할 것으로 보임.

○ 향후, 마포구는 전문 사서직 도서관장의 필요성과 도서관의 직영 및 위탁 운영방식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주민들의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합리적이며 효과적인 도서관 운영 방안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붙임 1 관련법령

▣ 「도서관법」

제4조(도서관의 구분) ① 도서관은 그 설립·운영 주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립 도서관: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도서관
2. 공립 도서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
3. 사립 도서관: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

② 도서관은 그 설립목적 및 대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공공도서관: 공중의 정보이용·독서활동·문화활동 및 평생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시설을 포함한다.
가.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작은도서관
나. 어린이,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족 등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2. 대학도서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대학교육과정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교원과 학생 및 직원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3. 학교도서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교원과 학생 및 직원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4. 전문도서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소속 직원, 공중에게 특정 분야의 전문적인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5. 특수도서관: 특수한 환경에 처한 사람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도서관을 말한다.
가.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사람이나 그 보호자 등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병원도서관
나. 육군·해군·공군 등 각급 부대의 장병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병영도서관
다. 교도소·보호감호소·치료감호소 등에 수용된 사람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교정시설도서관

제34조(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 및 도서관운영위원회 등) ①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
② 공립 공공도서관은 해당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하게 협조하기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7조(금전 등의 기부) ① 누구든지 도서관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을 도서관에 기부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도서관은 제1항에 따른 기부가 있을 때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접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부 및 접수의 절차, 관리·운영 방법 등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이용료) ① 공공도서관은 그 이용자에게 이용료 등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도서관이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용료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5.3., 2020.1.9., 2023.7.18., 2023.12.29., 2025.1.1.>
1. "출산 및 양육지원"이란 출산 및 양육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출산 및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립·시행하는 시책 등을 말한다.
2. "다자녀 가족"이란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족(다만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3. "저출산 인식개선 정책"이란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고자 민·관·학이 공동 또는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행사, 홍보 등을 말한다.
4. "다둥이 행복카드"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자녀 가족을 위한 우대용 카드를 말한다.
5. "출생축하용품"이란 아이의 출생을 축하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물품을 말한다.
6. "대상 아이"란 서울특별시의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에 의해 주민등록표에 '출생' 등의 사유로 신규 등록된 아이 및 서울특별시 내 자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예정일이 기입된 출생축하용품 신청서를 제출한 모 또는 부의 아이를 말한다.
7. "보호자"란 친권자 또는 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대상 아이를 사실상 보호·양육하거나 출산예정인 사람을 말한다.
8. "지원대상자"란 대상 아이의 보호자 중 1명으로 서울특별시 자치구 내에 주민등록을 마친 사람을 말한다.
9. "1인 자영업자등" 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근로복지기본법」제9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1인 자영업자"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1조의15의 적용을 받는 "노무제공자" 및 "플랫폼 종사자"
다. 「예술인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으로「예술인복지법」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라. 「서울특별시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권익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프리랜서"
마. 기타 고용보험 수급요건 미충족 근로자,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의 근로자, 고용보험 미성립사업장의 미가입근로자

▣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다자녀 가족"이라 함은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족(다만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등) ①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는 안건이 있는 경우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 이내로 하고 심의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건축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해당 민간위탁 분야의 전임강사 이상의 관련 학과 교수
3. 구의회 의원 2명
4.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공무원
5.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공정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